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8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:최은석・김종양・권성동

김성원 • 박충권 • 고동진

이인선 · 송언석 · 박덕흠

서지영 · 조승환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, 사업 종류별·지역별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.

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,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않고 있는 실정임. 실제, 2023년 기준 서울 임금수준(100) 대비 울산의임금 수준은 91.3%, 대구 80.8%, 광주 77.5%, 제주 71.4%에 그쳤음.

특히, OECD 41개국 중 미국, 일본, 독일, 호주,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·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.

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

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

법률 제 호

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 중 "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"를 "종류별·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종류별"을 "종류별·지역별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·지역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분)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분) ① ------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 ----종류별·지역별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. 정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 별 • 지역별-----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 <후단 신설>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 · 지역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